

## 인천광역시 영종구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연월일: 2026. 10.

제 출 자: 경제지원과장

### 1. 제안이유

관내 물류·배달·출장서비스 등 이동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에 근거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쉼터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다. 이동노동자 지원사업 및 쉼터 설치·운영(안 제5조 ~ 제6조)
- 라.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의 제한(안 제7조)
- 마. 위탁 및 재정지원(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 다. 입법예고 : 2026. 8. 24. ~ 9.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라. 기 타
  - 규제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비규제 대상)
  -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불수용(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 제출)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인천광역시 영종구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구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안전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법률, 노무, 취업, 안전, 건강 등에 대한 상담·교육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
4. 이동노동자 안전확보를 위한 장비 및 지원
5. 이동노동자 인식개선 및 안전 캠페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쉼터 설치·운영)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및 무더위·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
3. 안전교육 및 노동환경 개선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7조(쉼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쉼터에서 음주, 흡연, 도박 등을 하는 경우
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26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제4호의 근로복지사업으로 한정한다.

1.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3.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8. 25.] [대통령령 제36621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6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전단에서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람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노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배달

가. 소화물배송(「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론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을 직접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

나. 택배(「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집화 또는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

다. 그 밖에 음식, 신문, 학습지, 상품 등의 배달

2. 대리 운전(자가용 운전자를 대리하여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노무를 말한다)

3. 방문 판매(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노무를 말한다)

4. 대여 제품 방문 점검(고객이 구입 또는 대여한 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하는 노무를 말한다)

5. 방문 교육(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나 교육 교구를 이용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노무를 말한다)

6. 보험 모집(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 영업점에 제출하는 노무를 말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무 외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

②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

2. 냉난방시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안
- 비용발생 요인 : 안 제5조3호, 안 제6조, 안 제8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영종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연평균 예상 비용 : 20,000,000원
    - 설치비(한시적인 경비, 시 보조금) : 60,000,000원
    - 운영비(연평균 5천만 원 미만) : 20,000,000원
- 산출기초 ('26년 계양구 간이 컴퓨터 설치·운영비 참고)

(단위:천원)

|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 산 출 기 초 |
|----------|------|--------|---------|
| 총 계      |      | 80,000 | (100 %) |
| 시 비 (소계) |      | 60,000 | ( 75 %) |

(단위:천원)

|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 산 출 기 초                                                                                                                                                                              |
|----------|-------|--------|--------------------------------------------------------------------------------------------------------------------------------------------------------------------------------------|
| 설치비      | 시설비   | 50,000 | ○ 인테리어공사 30,000천원×1식<br>○ 전기공사 10,000천원×1식<br>○ 무인관제시스템 10,000천원×1식                                                                                                                  |
|          | 자산취득비 | 10,000 | ○ 공기청정기 1,000천원×1대=1,000<br>○ 텔레비전 500천원×1대=500<br>○ 컴퓨터 1,500천원×2대=3,000<br>○ 냉장고 1,000천원×1대=1,000<br>○ 헬멧 살균기 2,000천원×1식=2,000<br>○ 책상, 의자 2,000천원×1식= 2,000<br>○ 청소기 500천원×1식=500 |
| 구 비 (소계) |       | 20,000 | ( 25 %)                                                                                                                                                                              |
| 운영비      | 사무관리비 | 14,000 | ○ 소모품 구입 1,050천원×12월=12,600<br>○ 홍보비 1,400천원× 1식=1,400                                                                                                                               |
|          | 공공운영비 | 6,000  | ○ 무인관리시스템 200천원×12월=2,400<br>○ 관리비(전기) 200천원×12월=2,400<br>○ 인터넷요금 50천원×12월=600<br>○ 정수기(렌탈) 50천원×12월=600                                                                             |

작성자 공항경제국 경제지원과장 조 정 희